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종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94

발의연월일: 2025. 2. 12.

발 의 자:허종식·김교흥·김동아

노종면 • 박성준 • 박찬대

유동수 · 이용우 · 이재관

이해식 · 이훈기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600만 명에 달하는 수용능력을 가진 세계적 규모의 공항임에도, 인근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부재하여 열악한 의료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.

참고로 미국, 일본 등 주요국제공항의 경우 공항 인근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이 위치하여 대형 항공사고 등 대응에 대비하고 있음.

우리나라도 대형 항공사고, 국제적 감염병 확산 등에 대비하여 인천 국제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나, 「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」상 공기업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어 직접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실정임.

이에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기업을 추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

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재난이나 국제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제2항제5호 및 제64조제1항제4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허종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09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제5호 중 "준정부기관"을 "공기업·준정부기관"으로 한다. 제64조제1항제4호 중 "준정부기관"을 "공기업·준정부기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
제33조(개설 등) ① (생 략)	제33조(개설 등) ① (현행과 같				
	슬)				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				
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					
관을 개설할 수 없다. 이 경우					
의사는 종합병원・병원・요양					
병원·정신병원 또는 의원을,					
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					
과의원을, 한의사는 한방병원·					
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, 조산					
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					
다.		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		
5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	5				
법률」에 따른 <u>준정부기관</u> ,	<u>공기업 • 준정부</u>				
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	<u>기관</u>				
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					
의료원, 「한국보훈복지의료					
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					
지의료공단					
③ ~ ⑩ (생 략)	③ ~ ⑩ (현행과 같음)				
제64조(개설 허가 취소 등) ① 보	제64조(개설 허가 취소 등) ①				
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・군수					

• -	구청장	은	의료기	기관이]	다	음
각	호의	어느	하니	·에 ㅎ	개당	하	면
コ	의료	업을	1년	의 부	범위	에	서
정기	지시키	거나	개설	허.	가의		취
소	또는	의료	기관	폐쇄	를	명	할
수	있다.	다만	, 제8	호에	해	당	하
는	경우여	에는 :	의료기	기관	개설	1	허
가	의 취:	소 또	는 의	료기	관	폐	쇄
를	명하여	여야 ?	하며,	의료	기관	}	폐
쇄	는 제3	33조저]3항고	과 제	353	<u> </u>	1
항	본문여	에 따i	라 신	고한	의	豆	기
관여	에만 더	명할 <i>=</i>	수 있	다.			

- 1. ~ 3. (생략)
- 4.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 ·비영리법인, <u>준정부기관</u>·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 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4의2 ~ 9 (생 략)

<u>.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4
<u>공기업·준정부</u>
<u>기관</u>
4의2. ~ 9. (현행과 같음)
4-12. 3. (包部并 有百)